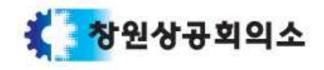
#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 건의

### 2022. 10



##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 건의

#### Ⅰ.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는 산업의 집적과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해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.
-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 기존 '아파트형 공장'이 '지식산업센터'로 개칭되었으며, 명칭 뿐 아니라 건축물 기준이 고밀·고층화되고 첨단산업 입주에 유리하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음.
- 더불어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)」에 근거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(시행자)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도 지식산업센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.
- 그러나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이 밀집하고 산업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, 2021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80.6%가 수도권에 밀집하는 등 수도 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.
  - \* 2021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,235개 중 수도권 996개(80.6%) 국토연구원, 국토정책 브리프, 2022
-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12일, 수도권 편중현상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.
- 하지만 동 개정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최초입주자의 취득세와 재산세, 그리고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.

##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비수도권 감면율 변화

감면대상	취득세 감면율		재산세 감면율	
	기존	개정안	기존	개정안
시 행 자	35%	35%	37.5%	35% (5년 한)
 입주기업	50%	35%		

- 현재 비수도권도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나, 수도권과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목적인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- 더불어 현재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은 그동안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임.
-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감소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활성화에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Ⅱ. 건의

○ 기 입법예고한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제58조의2(지식산업 센터 등에 관한 감면)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.

2022. 10. 11

##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천